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진행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7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생아”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 4. (생략)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u><신설></u> ④ ~ ⑥ (생략)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6. 별표 2 제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u>신생아</u> 의 경우 : 출생한 날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① ----- ----- -----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다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	---

	<u>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u>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u>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u>

	<u>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u>
4. (생략) ②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